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75

발의연월일: 2021. 4. 22.

발 의 자:서일준·박대수·지성호

김용판 · 정희용 · 이주환

하영제 • 백종헌 • 이종성

김태흠 • 양금희 • 서병수

김형동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상콘텐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영상제작자가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제작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의 3%(중견기업의 경우 7%, 중소기업의 경우 10%)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.

그러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공제율은 스페인 등 해외 주요국가의 공제율에 비하여 낮고, 현재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의 국가 간 경계가 허물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영상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세액공제율을 현행의 2배

로 인상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의6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내에서 발생한 비용"을 "발생한 비용"으로, "100분의 3"을 "100분의 6"으로, "100분의 7"을 "100분의 14"로, "100분의 10"을 "100분의 20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 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6(영상콘텐츠 제작비용	제25조의6(영상콘텐츠 제작비용
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	에 대한 세액공제) ①
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	
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	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	
송프로그램 및 영화(이하 이	
조에서 "영상콘텐츠"라 한다)의	
제작을 위하여 <u>국내에서 발생</u>	<u>발생한 비용</u>
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영상	
콘텐츠 제작비용"이라 한다)이	
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	
츠 제작비용의 <u>100분의 3</u> (중견	<u>100분의 6</u>
기업의 경우에는 <u>100분의 7</u> , 중	<u>100분의 14</u> -
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	<u>100분의 2</u>
$\underline{0}$)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	<u>0</u>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	
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	
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	
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	
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	
법인세에서 공제한다.	
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